

제1437호
2016. 5. 19(목)

발행인: 동 작 구 청 장 이 창 우
편집인: 홍보전산과장 이 진 근
전 화 : 820-1458
F A X : 820-9996

선	기관의 장
람	

동 직 구 보

차 례

◎ 조 례

제2016-468호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----- 1

◎ 규 칙

제808호 :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----- 3

제809호 : 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
일부개정규칙----- 4

◎ 고 시

제2016-42호 :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----- 6

◎ 인 사 발 령 ----- 9

공														
람														

1.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구보는 공문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

조 례

◆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16-468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」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16년 5월 19일
동 작 구 청 장

1. 개정이유

생활임금 고시일을 생활임금 산출에 필요한 통계자료가 나오는 시기에 맞춰 정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생활임금 고시일을 ‘9월 10일까지’에서 ‘12월 31일까지’로 변경(안 제7조 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동작구청장[참조 : 일자리경제담당관,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 74, 유한양행빌딩 9층(대방동)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경제담당관(전화 : 820-9592, 팩스 : 820-9987, E-mail : lhjung@dongjak.go.kr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이유)

나. 의견제출자의 주소, 성명(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전화번호

※ 이 조례의 입법안은 자치법규 정보시스템(<http://www.elis.go.kr/>)에 게재되어 있습니다.

이 조례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·규칙
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
될 수 있습니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 제3항 중 ‘매년 9월 10일까지’를 ‘매년 12월 31일까지’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~② (생략)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10일까지 고시한다. 1. 생활임금의 수준 2. 생활임금 적용대상 3.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	제7조(생활임금의 결정) ①~② (현행과 같음) 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----- ----- 매년 12월 31일까지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

규 칙

◆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08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

2016년 5월 19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후단을 삭제하고, 같은 조 본문을 제1항으로 하며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숙직근무 종료시간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 1일을 지정하여 휴무토록 할 수 있다. 다만,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

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개정규칙**□ 개정이유**

숙직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당직자와 평일인 당직자 간 휴무의 형평성을 보장하고 직원들의 사기 진작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직근무자의 휴무 규정 조항을 보완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가. 제5조 : 숙직근무종료일이 휴무일인 경우 대체휴무 부여조항 신설

◆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809호**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·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
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**

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·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동작구청장 이 창 우 인

2016년 5월 19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·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② 구청장은 대행업체로 하여금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·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으며, 징수 수수료 전액을 구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, 대행업체의 수집·운반 비용은 위탁계약에 따른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·수집·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

□ 개정이유

우리구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 대행 방식이 독립채산제에서 실적제로 전환되어 종량제 수수료 처리에 있어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 수집·운반비를 직접 징수하는 방식에서 구와 대행업체간 계약에 의하여 대행 용역비를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, 현 시행규칙에서 공동주택과 음식점소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수수료 수입 중 일부 금액(수집·운반비)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을 구에 납부토록 되어 있는 규정 등을 삭제하여 대행업체에서 징수한 수수료 전액을 구에 납부하는 것으로 하여 현 체계에 맞게 개정하기 위함.

□ 주요내용

가. 공동주택과 음식점소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수수료에서 수집·운반비를 청소대행업체로 지급토록 한 현재 규정을 일부 삭제하고, 징수수수료 납부 등 내용을 명확히 함. (제3조제2항)

고 시

◆서울특별시 동작구 고시 제2016-42호

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-307호(2008.9.11.)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, 2010.3.4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46호(2012.12.20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 결정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-298호(2013.9.12.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고시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3-151호(2013.12.19)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207호(2014.6.5) 재정비촉진계획변경결정(경미한변경)고시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4-83호(2014.8.7.)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2호(2015.1.22)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, 서울특별시동작구고시 제2016-19호(2016.2.25.) 사업시행변경(경미한변경) 고시 된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,
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6년 5월 19일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

1. 정비사업의 명칭 :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58-1번지 일대
3. 시 행 면 적 : 74,477㎡
가. 택 지 : 55,329.1㎡
나. 정비기반시설

합 계	도 로	공 원	녹 지	공공청사	사회복지시설
19,147.9㎡	10,295.4㎡	4,494.2㎡	2,269.6㎡	1,362.5㎡	726.2㎡
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흑석7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(조합장 이 성 식)

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102-1 3층

5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 ~ 60개월
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동작구 도시재생과 비치된 도서와 같음

7. 건축물의 대지면적·건폐율·용적율·높이·용도 등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

구분 건축계획	택지1(아파트)	택지2(아파트)	택지 총계
대지면적	29,879.3㎡	23,587.5㎡	53,466.8㎡
건축면적	10,734.5530㎡	5,149.1262㎡	15,883.6792㎡
건 폐 율	35.9263%	21.8299%	29.7076%
연 면 적	54,477.8509㎡	104,178.1075㎡	158,655.9584㎡
용 적 율	130.5589%	296.8591%	203.9242%
층수(높이)	지하1/지상18층 (51.95m)	지하3/지상28층 (79.95m)	지하3/지상28층 (79.95m)
세 대 수	339	734(임대 162)	1,073 (임대162)
주 용 도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	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
※ 부분임대 322세대

8. 주택의 규모 및 주택 건설계획

공급 구분	주택의 형태	동 수	세대수	주택규모별세대수(전용면적 기준, ㎡)										
				39. 7717	42. 6987	59. 9154	59. 5777	72. 9510	84. 9184	84. 7536	84. 9108	113. 5822	113. 2377	135. 3270
계		20	1,073	65	75	151	22	44	332	278	62	16	20	8
분양	공동 주택	18	911	-	-	129	22	44	332	278	62	16	20	8
임대	공동 주택	2	162	65	75	22	-	-	-	-	-	-	-	-

9. 법 65조 규정에 의한 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

가. 관리청에 무상귀속 : 19,147.9㎡

(도로 10,295.4㎡, 공원 4,494.2㎡, 녹지 2,269.6㎡, 공공청사 1,362.5㎡, 사회복지시설 726.2㎡)

나. 국·공유지 무상양도 : 7,672.0㎡

10. 변경사유 :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8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(조합)로 부터의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

(건축계획 변경) 및 세입자대책 세대 변동사항 발생

11. 변경내용

가. 건축계획 변경사항

구 분		당 초	변 경	비 고
건축계획	대지면적	53,464.8㎡	53,466.8㎡	촉진계획변경 (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22호, 2015.1.22.)에 따른 대지면적 정정
	연면적	159,319.5188㎡	158,655.9584㎡	감) 663.5604㎡
	건폐율	30.1604%	29.7076%	감) 0.4528%
	용적율	205.4088%	203.9242%	감) 1.4846%
	층 수	지하3층, 지상28층 (최고높이 79.95m)	지하3층, 지상28층 (최고높이 79.95m)	변경 없음
	주차대수	1,356대	1,353대	감) 3대
	세대수(임대주택)	1,073세대(162세대)	1,073세대(162세대)	변경 없음

나. 세입자대책 세대(임대, 주거, 비대상)의 변동사항

내 용	대 상 세대수	임대주택 및 주거이전비 지급세대	주거이전비 지급세대	임대주택 지급세대	비대책 세 대	비 고
기 정	313	168	65	9	71	
변 경	314	169	65	9	71	

12. 기타 관련도서 :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동작구 도시재생과(☎820-1386)에 비치하고 있습니다.

인사발령

【발령 제89호】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임은정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5월17일부터 2017년5월16일까지)	복지정책과	지방사회복지주사보

2016. 5. 17字.

【발령 제90호】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변수진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5월19일부터 2017년5월18일까지)	보건기획과	지방보건주사보

2016. 5. 19字.

【발령 제91호】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배나리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5월20일부터 2017년5월19일까지)	기획예산과	지방행정주사보

2016. 5. 20字.

【발령 제92호】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문미라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5월22일부터 2017년5월21일까지)	어르신청소년과	지방행정서기

2016. 5. 22字.

【발령 제93호】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박현영	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4호 규정에 따라 휴직을 명함 (2016년5월23일부터 2017년5월22일까지)	건설관리과	지방세무서기
2	백수현	복직을 명함	행정지원과	지방행정주사보

2016. 5. 23字.

【발령 제95호】

연번	성명	발령사항	현직	
			부서	직급
1	윤영미	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	흑석동	지방행정주사보

2016. 5. 24字.

동
작
구
보

제
1
4
3
7
호

동
작
구



www.dongjak.go.kr

 **동 직 구**